사전컨설팅감사등적극행정지원에관한지침

제정 2022. 08. 01.
개정 2023. 12. 28.
개정 2026. 10.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감사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컨설팅 감사”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용”이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자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10.13.>
4. “기각”이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자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10.13.>
5. “의견제시”란 사전컨설팅을 통해 인용·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10.13.>
6. “반려”란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한 신청 등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안에 대해 검토·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10.13.>

제3조(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 신청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진흥원의 업무 관련 규정 또는 내규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업무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가 기관의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0.13.>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2.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6.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등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③ 사전컨설팅 감사로 진행한 사안이 일상감사 대상범위에 해당할 경우,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 ① 진흥원 각 부서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가 신청된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사전컨설팅 감사의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임직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규정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규정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제6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확인 등을 함께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직원은 감사부서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7조(사전컨설팅 의견서의 작성 및 결과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전컨설팅 결과를 인용·기각·의견제시 등으로 정리하여 ‘(별지 제3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6.10.13.>

②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첨부한 사전컨설팅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조회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

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③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등 제반 감사활동을 통해 확인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인사규정 제38조(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이행결과의 제출) 각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이행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면책 등) ① 상임감사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제33조 및 「내부감사규칙」 제19조의1제1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면제(이하 “적극행정면책”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진흥원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8.>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재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3.12.28.>

⑤ 상임감사는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10조(자체 사전컨설팅) ①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컨설팅으로 진흥원의 업무개선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감사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컨설팅 자문)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10.13.>

1. 진흥원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전컨설팅 사항
2.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전컨설팅 사항
3. 사전컨설팅 신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사전컨설팅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보칙) ① 이 지침에 의한 사전컨설팅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동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규정과 내부감사규칙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2022.8.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8.)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10.13.)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10.13.>

사전컨설팅 신청서

신청부서		컨설팅 신청 접수 일자	
건 명			

1. 신청 배경

* 작성방법 : 배경지식 없는 제3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또는 사업)의 내용, 사실관계, 규정 등을 충실히 기재

○ 업무(사업) 현황 및 내용

《 작성 예시》

○ A부서는 언제부터 ~를 위하여 ~업무(사업)를 추진하고 있고 주요 현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무(사업)의 상세 내용(필요 시 사진, 그림 등 포함), 추진 경과 등 (추진 경과 등 내용이 긴 사항은 별첨으로 첨부)

○ 업무(사업)와 관련된 규정과 이견 또는 문제점 등

《 작성 예시》

○ ~법 또는 ~규정 제00조 등에 따르면 ~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는)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와 ~이견이 있음
- (또는) ~로 업무 또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문제(국민불편, 예산낭비 등)가 있음

○ 이에 A부서에서 ~업무(사업)를 추진하면서 ~의 경우 ~게 업무(사업)를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함

2. 신청 요지

1) 신청 사항

* 작성방법 :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1~3줄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 등을 추가 기재하는 것도 가능함

《 작성 예시》

○ A부서가 ~업무(사업)를 추진하면서 ~의 경우 ~게 업무(사업)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필요시)

* 작성방법 : 해당 업무(또는 사업)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지침 등 관련 규정 내용을 기재

(사전컨설팅 신청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조문 등은 생략 가능)

《 작성 예시》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이하 생략)

3) 주요 쟁점

* 작성방법 : 신청부서 의견 및 반대 의견 등을 기재하되, 쟁점 내용을 1~3줄로 요약해서 주요 쟁점을 기재한 후 구체적 내용을 기재

※ 기재된 내용에 기반해서 사전컨설팅으로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충실히 작성

3. 신청부서 의견 등

1) 신청부서 확인 사항 및 의견

○

4. 사전컨설팅 체크리스트

대상	점검항목	해당 여부 (O/X)	구체적 사항 기재
컨설팅 대상여부 (제3조 제1항)	자체감사 감사대상 업무인지		
	공공의 이익 및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안인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인지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은 아닌지)		예) 판례·해석
	동일 사안에 대한 정립된 판례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해석이 없는지		예) 법령 및 쟁점사항
	이해관계자와 담당자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반려대상 여부 (제3조 제2항)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지		
	신청부서가 컨설팅 신청내용 외 기타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는 아닌지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는 아닌지		예) 해당내용 첨부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은 아닌지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등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는 아닌지		

* 구체적 사항 기재가 필요한 경우 붙임으로 상세 자료를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10.13.>

사전컨설팅 의견서

신 청 일	. . . [접수번호 -]
신청 부서명	
건 명	

❖ (쟁점 및 검토결과 요약)

1 신청 개요

1. 신청 이유

○

2. 쟁점

○

2 판단 기준(법리 · 증거 등 판단)

○

3 종합 의견

○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6.10.13.>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신청일 (결과회신일)		신청부서	
건 명			

1. 신청개요
2. 감사부서의 사전컨설팅 회신 의견 요지
3. 이행 결과
4. 사유*(감사부서의 사전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 작성)*